

## 산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小考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연구소장  
정규철

### 1. 산업재해의 규모

우리 나라에서 1996년 현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수는 210,226개소이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8,156,894명이며, 이들 중 0.88%에 해당하는 71,548명이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산업재해자에게 1996년 한해 동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된 각종 급여금의 총액은 1조 3,553억3,700만원을 넘고 있다. 이것은 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보상급여, 신체적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장해보상급여, 사망자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재비, 기타 특별급여 등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인적 손실, 시설, 장비 및 기물의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로 인한 간접손실액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직접손실액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간접손실액은 5조4,213억4,800만원으로 추산되며, 연간 총손실액은 6조7,766억8,500만원(약 \$52억)이라는 막대한 액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예방사업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 과제인기를 실감케 한다.

### 2. 산업재해의 발생추이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1987년에 총근로자의 2.66%이던 것이 행정당국에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0년에 이르러 1.76%로 2% 이하로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드디어 재해율 1% 이하(0.99%)로 떨어져서 산업재해예방과업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율의 감소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재해운동 등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업이 실효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재해율로 볼 때, 총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의 발생비율은 1995년에 0.99%로 비록 1%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도수율(1,000,000 연작업시간에 대한 재해발생건수)은 1987년에 9.77이던 것이 1990년에 6.70이었고, 1995년에 3.90로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강도율(1,000 연근로자에 대한 근로손실일수)은

1987년에 2.90이던 것이 1990년에 2.15였고 1995년에는 2.10, 그리고 1996년에는 2.12로서 거의 변동이 없다. 다시 말해서 발생률이나 도수율은 줄었으나 강도율은 줄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경미한 재해는 감소하였으나 사망 또는 재해를 남길 만한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의 발생은 여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표 1).

표 1. 산업재해발생 통계

연도별	근로자수	총재해자	재 해 자 수		재 해 율		발생률 <sup>1)</sup> (%)	도수율 <sup>2)</sup> (%)	강도율 <sup>3)</sup>
			사망자수	장해자수 (중 상 자)	부상자 (경상자)	경상자 총재해자(%)			
'87(5인)	5,356,546	142,596	1,761 + 25,244(18.9%) (1.21%)(14.0%)	115,591 (81.1%)	4.29	2.66	9.8	2.9	
'90	7,542,752	132,893	2,236 + 27,813(22.6%) (1.68%)(20.9%)	102,844 (77.4%)	3.43	1.76	6.7	2.3	
'95	7,893,727	78,034	2,662 + 29,803(41.6%) (3.41%)(38.2%)	45,569 (58.4%)	1.40	0.99	3.9	2.1	
'96	8,156,894	71,548	2,670 + 27,394(42.0%) (3.73%)(38.3%)	41,484 (58.0%)	1.37	0.88	3.5	2.2	

$$\text{*1)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quad \text{*2)도수율} = \frac{\text{재해자수}}{\text{연근로자수}} \times 1,000,000 \quad \text{*3)강도율} = \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둘째로 연도별로 총재해자중 사망자와 신체장애를 남길 정도의 중상자의 비율과 신체장애를 남기지 않은 경상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1987년에 15.2%와 84.8%로 경상자가 사망자와 중상자에 비해서 약 5.5배 가량 많았던 것이 1990년에는 22.6%와 77.4%로 약 3.5배로 감소하였고, 재해율이 1% 이하로 떨어진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41.6%와 58.4%, 42.0%와 58.0%로 약 1.4배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총재해자 중 사망자는 1987년에 1.21%이던 것이 1990년에는 1.68%로 증가하였고, 1995년과 1996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각각 3.41%와 3.37%로 증가하였다. 신체 장해를 남길 정도의 중상자 역시 1987년에 14.9%이던 것이 1990년에는 20.9%로 증가하였고,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8%를 초과하였다(표 1).

셋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된 급여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재해자는 1987년에 비해서 해마다 감소하여 1990년에 6.8%, 1996년에 50% 감소한데 반하여 총보험급여액은 1987년에 비하여 도리어 해마다 상승하여 1990년에 2.2배, 1995년에 4.7% 그리고 1996년에 5.6%로 급증하였다. 재해자 1인당 평균급여액을 보면 1987년에 170만원 정도이던 것이 1990년에는 400만원이 넘어 2.4배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다시 배로 증가하여 800만원을 넘어서 1987년에 비하여 5.1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6.1배로 증가하여 1인당 평균급여액은 1,000만원을 넘었다. 즉, 재해자수는 반감하였는데 산업재해보험의 총급여액은 5.6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1인당 평균급여액의 상승률은 더욱 커서 6.1배로 증가하여 재

해자 1인당 지급된 평균보상금은 무려 1,000만원을 초과하였다(표 2).

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총급여액 및 1인당 평균총지급액

연도	재해자수	총급여액	1인당 평균급여액
'87	142,596(100%)	241,255,121,540(100%)	1,691,879(100%)
'90	132,893(93.2%)	539,351,470,102(224%)	4,058,539(240%)
'95	78,034(54.7%)	1,133,577,490,290(470%)	8,690,213(514%)
'96	71,548(50.2%)	1,355,337,130,080(562%)	10,417,096(616%)

### 3. 산업재해 예방의 문제점과 대책

산업재해예방의 본래의 목적은 재해발생률을 줄여서 인명과 신체적

장해를 줄여서 인명과 신체적 장해를 줄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데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건데, 재해발생률은 1% 이하로 현저하게 줄었는데 단위작업시간당 작업손실일수(강도율)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재해자 1인당 평균총보상급여액은 10년전에 비해서 6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원래 산업재해는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남길 정도의 심한 부상자가 생길 정도의 중대재해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해가 1건 발생하면 신체장애를 남기지 않을 정도의 경상자를 내는 비슷한 유형의 재해는 30번, 그리고 비록 부상자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하마트면 부상을 입을 뻔한 위험사태, 소위 불발재해(near-accident)는 300번은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계학적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재해통계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된 통계자료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계자료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감독관청에서 재해예방사업의 목표를 재해발생률 0%로 낮추려는 무재해운동으로 재해발생이 없는 사업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표창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사상자를 낸 큰 재해가 아니면 이를 은폐하고, 사소한 부상자는 재해보고도 내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대형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재해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은폐되고 있다고 짐작되는 30번이나 자주 일어나는 작은 재해와 300번이나 일어나는 불발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안전하고 위험한 요소를 개선하고 제거하는 것이 대형재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재해운동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을 보상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문책하는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는 폐단이 있어 재해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미한 재해 또는 불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실천하는 사업장을 포상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